



6 대표적인 착오 신고 사례 및 올바른 신고방법

① '16.7.1 연도 중 중간 입사자의 근무기간을 '16.1.1~12.31로 신고

- 총급여 1,000만원이며, 총근무일수가 184일인 근로자
- 맞는 기준소득월액 : 1,630,000원 (10,000,000원 ÷ 184일 × 30)
-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: 819,000원 (10,000,000원 ÷ 366일 × 30)

▶ 근무시작일을 입사일(7.1)로 신고

② '16년 12월 급여를 '17년 1월 지급 후 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

- '16.11.1 입사하여 11월 급여(100만원, '16년 12월 지급), 12월 급여(100만원, '17년 1월 지급) 발생
- 맞는 기준소득월액 : 983,000원 (2,000,000원 ÷ 61일 × 30)
-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: 491,000원 (1,000,000원 ÷ 61일 × 30)

▶ '16. 12월분 급여를 소득총액에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

③ 휴직기간 미반영 : 휴직을 하였으나,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
- '16.1.1 입사, 총급여 2,000만원이며, 90일간 산전후휴가였으나 납부예외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가 일부(100만원) 발생
- 맞는 기준소득월액 : 2,065,000원 (19,000,000원 ÷ 276일 × 30)
-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: 1,639,000원 (20,000,000원 ÷ 366일 × 30)

▶ 소득총액에서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제외하고, 실제 휴직일수(90일)를 신고

④ 퇴직금 정산 등으로 주(현)과 종(전)으로 분리 신고하고, 근무기간과 소득총액을 다른 기준으로 신고

- 주(현) 급여총액은 퇴직금 정산 후 지급된 급여총액으로, 주(현) 근무기간은 1년으로 신고
- 실제소득보다 낮게 결정됨

▶ 근무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급여총액이 일치되도록 신고



7 소득총액 신고 Q&A

✓ 과세자료를 활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?

-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 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**소득총액 신고를 생략**하여 공단에 과세자료를 입수·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결정 후 통지합니다. (단, 소득총액 신고 대상은 사업장의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.)
- 기준소득월액(천원 미만 절사)
 - ▶ 2016년 소득총액 ÷ 2016년 근무일수(근무기간 - 휴직일수) × 30
- 사업장에서는 6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시고, **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공단에 정정 신고**하시면 됩니다.
- 공단은 6월초부터 홈페이지 및 EDI를 통해 과세자료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을 사전 안내합니다.

✓ 취득·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?

- 2016.12.1 이전 입사자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서하단 여백에 추가 기재 후 「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」를 함께 제출하고, 신고 대상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로 그은 후 여백에 “상실”이라 기재 후 「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」를 함께 제출

✓ 인턴(비정규직)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소득총액 신고방법은?

- 연도 중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이 변경된 경우(근로계약 변경 시점으로 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신고),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 및 소득총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예시

'16.1.1 입사, 3개월 인턴(총급여300만원), 4월부터 정규직(총급여1,800만원)
 ✎ 맞는 기준소득월액 : 1,963,000원 (18,000,000원 ÷ 275일 × 30)
 ✎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: 1,721,000원 (21,000,000원 ÷ 366일 × 30)
 ※ 공단에서는 전년도 취득(납부)재개지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신고 소득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소급 정정하오니 취득(납부)재개지의 소득도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✓ 2016년도 중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으나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아 소득총액 신고 대상(5유형)이 되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?

- 소득총액신고서에 실제 휴직일수를 기재하고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.
 ※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
✓ 소득총액 미신고시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?

-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2016년도 전체 가입자(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원)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(3.2%)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.

✓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은 매년 조정되나요?

-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 4,490,000원, 하한액 290,000원이며,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은 매년 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. (매년 3월 고시, 7월부터 적용)
 ※ A값 : 최근 3년간 전체가입자의 소득월액의 평균 (물가상승 반영)

✓ 연봉제 시행으로 개인별 소득이 공개되면 안되는데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(6월 발송)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나요?

- 국민연금 웹EDI 서비스 가입(<http://edi.nps.or.kr>) 후 신고서 작성 ✎ 연금고유신고서 ✎ 소득총액신고서 화면에서 “우편발송 제외 신청”을 하시면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가 EDI로만 발송됩니다.

2016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

수록내용

- 1 소득총액 신고란?
- 2 소득총액 신고방법
- 3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
- 4 소득총액 신고 주요 업무흐름
- 5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
- 6 대표적인 착오 신고 사례 및 올바른 신고방법
- 7 소득총액 신고 Q&A



1 소득총액 신고란?

- 공단은 **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**를 연계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,
- **개인사업장사용자,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 · 자료상이자, 과세자료보유자 중 30% 이상 상 · 하향자, 휴직일수 상이자는**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

2 소득총액 신고방법

🔍 신고대상

2016. 12. 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
- 납부예외중인 자 및 2016. 12. 2 이후 취득(납부재개)자는 제외
▶ 2016.12.2 이후 취득(납부재개)자는 취득(납부재개)시의 기준소득월액으로 2018년 6월까지 적용

🔍 신고사항

- ① 근무기간 : 2016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(사업)기간
-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16년도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산정
- 2016년 중도 입사자는 2016.1.1이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로부터 산정
- ② 휴직일수 : 2016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 기재
- ③ 소득총액 : 위 근무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(소득)
- 개인사업장사용자 : 『사업소득명세서』 상의 ⑩번 소득금액
- 근로자(외국인 포함) : 『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』 주(현)근무처의 ⑯번 금액
+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

🔍 신고방법

-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16년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게 직접, 우편 또는 FAX로 제출
- 국민연금 웹EDI(<https://edi.nps.or.kr>) 및 사회보험 EDI 서비스,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(www.4insure.or.kr)를 통하여 신고

🔍 신고기한

2017년 5월 31일(수)까지
(단,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17. 6. 30(금)까지 신고 가능)

3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

- 소득총액 신고서의 신고유형란에 유형 표기

유형	발취 대상	발취 사유
1유형	개인사업장사용자	소득 신고자료 없음
2유형	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	소득 신고자료가 없거나 법인/사업자등록번호가 불일치
3유형	중전소득 대비 30%이상 상향자 (단, 취득일과 과세시작일 상이자에 한함)	연말정산 신고 시 근무기간, 소득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착오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
4유형	중전소득 대비 30%이상 하향자	
5유형	휴직일수 상이자 (납부예외신청기간이 산전후 · 육아휴직 및 산재요양 휴직기간보다 1개월 이상 짧은 자)	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될 경우, 소득총액 대비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되어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

※ 3유형, 4유형, 5유형은 필요시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4 소득총액 신고 주요 업무흐름

- 2017. 4월 2016년 근로소득자료 입수, 소득총액 신고대상 선별
- 2017. 5월 소득총액 신고 안내 및 신고서 발송 · 접수
- 2017. 6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 발송
- 2017. 7월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고지
- 2017. 10월 국세청 과세자료 대비 소득 적정신고 여부 재확인 실시

5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

📢 연금보험료가 달라집니다.

-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,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7년 7월 ~ 2018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.
- 2017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(천원 미만 절사)의 9%가 부과됩니다.

📢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.

-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.
-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은 “내연금(<http://csa.nps.or.kr>)” 또는 “국번없이 ☎ 1355” 로 확인하세요.

작성방법 예시

• 근로자

※ '16.3.1. ○○상사00에 입사, **5.1부터 5.31까지 휴직**, 6.1부터 복직 근무 (단, 공단에 납부예외의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도 없음)

201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구분	주(원)	중(천)	총(천)	납세조합	합계
⑨ 근무처명	○○상사	□□기업			
⑩ 사업자등록번호					
⑪ 근무기간	2016.3.1~2016.12.31				
⑫ 급여	15,000,000	3,000,000			18,000,000
⑬ 상여	5,000,000	500,000			5,500,000
⑭ 인정상여					
⑮ 계	20,000,000	3,500,000			23,500,000

2016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서

순번	성명	주민등록번호	취득일	근무시작일	공적 휴직일수	실제 휴직일수	소득총액
0001	홍○○	123456-12****	2016.3.1	3.1	0	31	20,000,000

• 근무시작일 작성방법

- 동일 사업장에 2016.1.1 ~ 3.25 및 2016.8.1 ~ 12.31 근무 → **8.1 ~ 12.31**
- 실제 근무기간은 2016.1.1 ~ 12.31 이나 2016.7.1 국민연금 가입 → **1.1 ~ 12.31**
- 분리적용 관계에 있는 A사업장에 2016.1.1 ~ 4.30 근무, B사업장에 5.1 ~ 12.31 근무 → **1.1 ~ 12.31(분리적용 사업장간 전입 · 전출시 합산하여 기재)**

• 소득의 범위

-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
※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비과세소득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포함
(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, 우리스주조합인출금 비과세,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)
☑ 2016년 전 기간 동안 휴직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득으로 신고
☑ 외국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소득 파악이 곤란한 **해외 파견근로자**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**근로자의 평균액을 참고하여 신고**

• 개인사업장사용자

2016년 귀속 사업소득명세서

① 소득 구분 코드	30 (부동산임대소득)	40 (사업소득)
⑤ 사업자등록번호	○○○-○○-○○○○○○	○○○-○○-○○○○○○
⑨ 총 수 입 금 액	20,000,000	30,000,000
⑩ 필 요 경 비	5,000,000	10,000,000
⑪ 소득금액(⑨-⑩)	15,000,000	20,000,000

※ 해당 사업장 소득금액을 소득총액에 기재하시되, 동일사업장에서 복수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 · 사업소득은 소득총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.